

다국적기업의 공정거래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좌 · 담 · 회



- ❖ 일 자 : 2002. 10. 2.
- ❖ 장 소 : 공정거래협회 회의실
- ❖ 참석자 : 김 용 (공정거래협회 회장)
 황보용 (한국까르푸 상무)
 이경원 (한국P&G 이사)
 남종배 (S-OIL 상무)
 정용재 (GE코리아 이사)
 배진한 (코카콜라보틀링 상무)

김 용 : 다국적기업의 애로사항을 토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국적기업의 공정거래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 협회는 지난 6월 공정거래 전반에 관하여 대학교수, 변호사,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개최하여 협회 간행물 『공정경쟁』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서 다국적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부정책의 건의사항으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공정거래사항과 관련하여 조사단계, 심판단계, 법체계 등 공정거래법 전반과 협회의 역할 및 요구사항 등을 광범위하게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용 : 한국까르푸의 독특한 판매전략이 한국의 공정거래법과의 차이로 인하여 업무진행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통효율화 측면의 판매전략이 한국의 법체계와 맞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한국까르푸는 2002년도부터 마케팅비용 감소, 가격정책비용 증가 등 한국까르푸의 시스템을 전면 전환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독특한 시스템이 있을 때의 사업 목표와 현재의 사업목표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한국까르푸는 공정거래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 용 : 유통효율화로 인해 비용이 감소하여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제23조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 라고 되어있어 범위가 광범위한데 반해, 외국에는 '경쟁을 제한한다' 라고

유사 심결사례를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축적을 해야하는데, 현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당 협회는 연구소를 개설하여 외국 및 국내의 심결사례 등을 비교·분석하는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우방과 업무제휴를 맺어 회원 기업들의 공정거래에 관한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 한국공정거래협회장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고 비용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공정위는 독점규제나 카르텔, 기업결합과 같은 중점사항만 담당하고 나머지 사인간의 분쟁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현재에는 분



거래처와 공급자간의 개별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 우선 양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양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용 한국까르푸 상무

쟁조정은 하도급법에서 운영중이며 가맹사업거래법과 약관법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황보용 :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거래처의 매출이 부진하거나 거래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때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와 공급자간의 개별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 우선 양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양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용 : 미국의 경우 합의제도가 있는데, 분쟁 당시 당사자간에 중재를 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시장경쟁의 왜곡 등을 개선하는 접근안이 나왔을 때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양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으로 처리하는 일종의 분쟁조정 성격도 가미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도 현재 미국식 제도나 분쟁조정협의회 등의 제도개선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P&G 이경원 이사께서 공정거래업무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에 대하여 토의해주시죠.

이경원 : 한국P&G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준수하도록 기업윤리강령에 명시되어 있고 현재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대외적인 모든 공문은 법무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불만사항으로 P&G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반면에 불성실 기업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품류의 경우 P&G는 엄격히 법을 준수함으로써 불성실기업과 비교하여 기업활동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 용 : 경쟁의 일선에 있는 정유업계 S-OIL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남중배 : 경제 전부문으로 경쟁의 원리가 확산되면서 이제 기업과 소비자 모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무

엇보다 독과점시장구조에서 탈피하여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9월 유소의 정유사 취급제품 복수허용(복수상표표시제)으로 정유사간 경쟁이 촉진되기도 하였습니
다만, 정유사간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구조하에
서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은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쟁적 시장구조 정
착을 위해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
니다.

시장참여자 중 1위와 2위의 시장점유율 합계
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상태로 지속
되어 온 국내 석유시장에서 S-OIL은 가격 및 품
질경쟁을 선도함으로써 경쟁촉진을 주도하여 왔
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 배치되
는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대신 공정
경쟁 저해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은 대폭 강화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
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0년대 이후 정부의
산업정책은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85년 공업발전법을 제정, 종래의 개별 공업육
성법을 폐지하고 단일 법률로 이행하면서 시장
진입과 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산업합
리화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제한적 요소를 불식하였
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을 묶어놓고 있던 규
제가 철폐되면서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산업
등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하
는 이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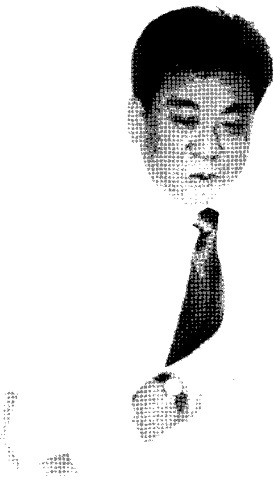
아울러 정부는 지식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95년 5월에 공업발전법을 폐지하고 제조업



시장변화에 따라, 과거 공정거래관련법에서 상정하고
있던 경제적 강자와 약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한 판매업자와 약한 제조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매가가격의 유지행위는 성립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판매업자의 가격정책에 의해 제조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며, 동일한 규율행위에 대해서는 당사
자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탄력적인 법적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경원 한국P&G 이사

과 제조업 외의 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산업발전
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정책
의 전환에 있어 아직도 미진한 분야가 에너지 분
야입니다. 개별산업 육성차원에서 제정된 석유사
업법이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것은 정유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에서는 석유가 갖는 물리적 특수성을 들어 석유
사업법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석유
수출입이 자유화되고 시장이 개방화된 이상 사업
영역에 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존치할 아무런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 배치되는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대신 공정경쟁 저해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은 대폭 강화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산업 육성차원에서 제정된 석유사업법이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것은 정유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석유수출입이 자유화되고 시장이 개방된 이상 사업영역에 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존치할 아무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 남종배 S-OIL 상무

필요성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의 석유사업법은 일본의 석유업법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는데, 일본은 석유업법을 폐지하고 비축과 저장시설에 관한 사항은 「석유의비축확보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당국의 규제개혁시책은 건수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결과 기업이 느끼는 체감규제지수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은 절차 간소화 등에 치우쳐 왔으며, 진입규제 등 핵심사항에 대한 개혁은 매우 미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석유산업에서도 석유사업법상 대부분의 규제가 철폐되었지만, 시장참여자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규제인 유통관련 규제(횡적거래 금지 등)는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제도와 관련하여 표시·광고 규제, 하도급 규제 등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소비자보호법으로 규율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거래관계가 다양한 형태를 띠며 따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거래자유의 원칙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하고 싶고 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였으면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차별적 취급의 경우 거래처의 규모에 따라 외상일수 등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영업전략의 차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공급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관점으로 보면서 너무 경직되게 운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유유통시장에서 정유사가 주유소업체보다 거래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정위는 제재조치보다는 예방 조치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부터 공정위가 추진해온 포괄적 시장구조 개선시책(Clean Market Project)의 시행취지에는 동감합니다. 사실 독과점 시장구조가 온존하는 이상 불공정거래행위는 나타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동시책이 법 위반행위 적발에만 중점을 둘 경우 행태적 치유에 그쳐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치유에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최근 공정위의 사건 처리실적 추이를 보면 공정위가 사건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정위가 사건처리보다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시장구조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경쟁제한, 기업결합심사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유사한 사건마다 관련 업종에 대한 시장분석이 다시 이루어짐에 따라 사건처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이에 산업별 전문가 육성 또는 시장분석 전담부서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절차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결합에 따라 실효성이 없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김 용 : 공정거래법 제63조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석유사업법에 어떤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지, 폐지해야 할 조항의 이유를 적시해서 송부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조직이 기능별 조직에서 산업별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산업별로 조직되어 있는데, 조사1부, 2부 또는 자동차업종, 전자업종 등 업종별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GE코리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용재 : GE코리아는 Power Systems,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직원들을 교육하고, 직원들은 교육받는 내용을 스스로 테스트하는 등 사후적인 측면보다 사전적인 측면에서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용재 GE코리아 이사

Aircraft Engine, Capital, Medical Systems, Appliance 등 총 12개의 사업부문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본부 격인 GE International을 포함 총 18개의 독립법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사업을 Compliance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GE코리아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내에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GE의 제반 규정은 미국법에 근거하고 있는 바, 현지법이 더욱 엄격한 경우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준법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직원들을 교육하고, 직원들은 교육받는 내용을 스스로 테스트하는 등 사후



다국적기업들은 엄격한 자체검증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기업들의 역차별로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공정위의 제재가 미치지 못하니 다국적기업들의 매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 배진한 코카콜라보틀링 상무

적인 측면보다 사전적인 측면에서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E에는 사내 감사팀(Corporate Audit Staff)이 있어서, 이 팀이 전 세계를 돌며 각 국에 있는 GE 사업에 대하여 공정거래를 포함한 기업의 활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준법 평가인 Session D를 통하여 직원 스스로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안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실행을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경쟁자와의 담합회피 등 주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경쟁자 접촉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를 교육,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공정거래법 등에 익숙하지 않거나 위법의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직원의 사고가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GE코리아는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Compliance 준수여부를 검토하는데, 간혹 지역기업들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즈니스 관행과 공정거래법과의 차이가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공정거래법을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기업은 비즈니스 관행을 쫓는 기업에 비하여 시간과 노력이 더욱 투입될 뿐 아니라 경쟁력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려는 기업과 비즈니스 관행을 따라가는 기업이 공존한다고 본다면, 법을 준수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현실화하거나 공정거래법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여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 용 : 마지막으로 코카콜라보틀링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한 : 코카콜라보틀링은 본사가 호주에 있으며, 법규 준수에 있어 본사의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국적기업들은 엄격한 자체검증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기업들의 역차별로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공정위의 제재가 미치지 못하니

까 다국적기업들의 매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각입니다.

이경원 : 시장변화에 따라, 과거 공정거래관련 법에서 상정하고 있던 경제적 강자와 약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과 관련하여 제조업자는 강자, 판매업자는 약자로 전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아주 강한 판매업자가 있기도 하고 아주 강한 제조업자가 있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강자와 약자가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강한 판매업자와 약한 제조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의 유지행위는 성립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판매업자의 가격정책에 의해 제조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강한 제조업자와 약한 판매업자 사이에서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요구 등에 순응하여야만 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판매업자라 하더라도 상대하는 제조업자에 따라 강자 또는 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요컨대,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맞추어, 동일한 피규율행위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탄력적인 법적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생

배진한 :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사례를 검토하기도 어렵습니다.

김 용 : 공정거래협회의 기능이 교육과 정보·자료 제공인데, 교육은 공정거래 연수과정을 신설하였고, 정보·자료 제공문제는 유사 심결사례를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축적을 해야하는데, 현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당 협회는 연구소를 개설하여 외국 및 국내의 심결사례 등을 비교·분석하는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무법인 우방과 업무제휴를 맺어 회원기업들의 공정거래에 관한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여 주시어 감사드리고 좌담회의 의견은 정부정책 건의사항과 소중한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사업법 폐지 및 폐지시 보완대책 ■

본 자료는 S-OIL이 제공한 것이며, 한국공정거래협회는 대정부 건의사항 보고서(11월 예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문제의 제기

- 현 석유산업의 국내외 환경은 1970년 석유사업법 제정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짐
 - 소비지정제주의에 입각, 정부개입을 통한 석유산업 보호·육성

- ⇒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기능 제고로 정부의 역할은 시장감시자에 국한
- 세계경제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석유산업의 신규 진입 장벽이 제거 (국가전략적 물자 ⇒ 수출입 자유화 등으로 전략적 비중 감소)

-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시책에 따라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철폐
- 석유사업법 또한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그 개정과정에서 석유사업법의 존치 의미는 오히려 계속 축소되어 왔는바, 현 시점에서 수급/가격의 안정 및 적정품질 확보라는 법 목적은 시장경쟁원리를 축으로 하는 경제운영 시스템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

■ 석유사업법 폐지의 타당성

(1) 석유사업법의 존치는 산업정책 방향과 괴리

- 개별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육성위주의 산업정책이 90년대 초 자율·개방의 추세하에서 경쟁원리에 의한 시장기능을 제고하고 기술/지식기반 확충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
 - 석유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일지라도 에너지시장에서 타에너지원(가스, 원자력등)과의 경쟁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으로 과거 전략물자 개념 → 일반 교역물품으로 자리매김 되면서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가격조정이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옴
- 소비지정제주의 개념을 기초로 제정되었던 석유사업법은 정부의 산업정책에 발맞추어 그 동안 동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조항을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석유사업법의 내용중 소비지정제주의 요소는 사실상 전무한 바, 산업정책적으로 석유사업법의 존치 의미는 상실
 - 정제업 등 석유산업의 대외개방, 수출입자유화 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비지정제주의에 입각하여 제정된 석유사업법을 존치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석유 산업의 수출산업으로의 발전 등을 제약할 수 있음
 - * 소비지정제주의 : 원유가 생산되지 않는 소비국은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원유를 도입하여 자국에서 석유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 바

- 람직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론
- 따라서 석유사업법이 석유산업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제정된 이후 그 제정취지가 소멸되었다면 이를 폐지(85년 7개 개별공업육성법을 일괄 폐지사례 참고)하고 전체 산업정책의 틀에 이를 흡수하는 것이 타당함

(2)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

- 석유사업법은 크게
 - 사업조건 규정(정제업/수출입업 등록제, 판매업 등록제 등)
 - 사업자 의무규정(비축, 품질확보, 행위금지 등)
 - 평상시/ 비상시 수급 및 가격안정조치 규정(부과금, 조정명령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그 중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조건인 바, 규제목적 달성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등록요건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에 대해 불필요한 부담만 부과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등록요건으로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되는 양과 전년도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 하는 양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영 제7조 2항)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저장시설 규모가 어떠한 근거에서 산출되었는지, 동 규정이 정제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어느 정도의 비용부담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객관적이지 못함
 - 내수판매량 60일분 규정은 비상시 2개월분 비축을 위한 저장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비축의무규정과 중복된 규제이며 설령 저장시설 규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일률적으로 2개월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음
 - 아울러 내수판매량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저장시설 구비규모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내수와 수출의 비중을 각각 75%, 25% 수준을 이상적인 공급패턴으로 간주하였다고 하나,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사업요건은 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감안하여 기업으로서의 자체적으로 적정한 규모를 산정하여 저장 시설 등을 구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은 기업경영의 창의성을 저해할 것임
⇒ 사업요건 규정 폐지시 석유사업법은 더 이상 특정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로서의 존재의의를 상실

(3) 타법률상의 관련규정 및 관련법령의 정비로 폐지시 문제점 보완 가능

- 현 석유사업법을 폐지하더라도 동 법률목적이 관련 법령으로 보완된다면 폐지는 무방할 것임
- 석유사업법의 목적이 가격안정, 품질확보, 비상시 대비수급(비축)에 있다면 가격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품질은 환경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비축만 별도 입법화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임
 - 석유사업법 폐지시 법내용 중 사업요건의 경우 일종의 진입장벽의 성격이 강함에 따라 폐지하더라도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 사업자 의무규정 중 품질확보, 행위금지조항 등은 평상시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써 타법률(공정거래법, 세법, 환경법 등)의 현행 관련규정 및 정비로 공정경쟁 확보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 * 특히 사업자의 행위금지조항(정량미달 판매, 차별적 거래, 매점매식, 유통질서저해행위 등)은 대부분 공정거래법과 세법상의 규정으로 제재가 가능한 조항으로서 일반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이중규제 하는 것은 위반여부에 대한 부처별 판단기준의 상이함으로 인한 법체계 혼선 등 문제점을 유발
 - 사업자 의무규정 중 비축관련 조항과 비상시 조치사항은 비축관련 조항의 별도 입법화조치(일본 사례)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관련규정 개정으로 해결 가능

〈일본의 비축관련 별도 입법화 조치내용〉

- 일본은 2002. 1. 1일부로 석유업법을 폐지하고 석

유비축법을 개정한 석유의 비축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 동 법률은 비상시 대비 비축확보를 목적으로 수입업자에 대해 비축의무 이행에 필요한 저장시설 보유를 등록요건으로 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각 사업자에 대해서는 비축의무만을 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2항, 3항〉

-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월분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비축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석유수입·판매부과금제도는 교통세법/특별소비세법으로 통합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운용(에너지세제개편 세월에 부과금을 포함)
 - * 부과금제도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재원과 용도간의 괴리(유가완충사업에는 극히 일부가 계상), 석유류에 대한 조세와는 별도로 준조세형식으로 동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가중은 물론 에너지원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형평에 맞는 과세를 저해하는 문제점 등으로 폐지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

■ 결론

- 자율·개방의 정책기조하에서 그 존재의의가 상실된 석유사업법을 폐지하여 시장경제시스템의 전환에 부응
- 다만, 동 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 i)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비축관련 규정은 별도 입법화
 - ii) 석유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가 필요